

# 2015년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 안내

## □ 용자대상 및 규모 등

- 용자규모 : 총 306,000천원
- 신청기한 : 2015. 3월 ~ 12월(용자규모액 소진시까지)
- 용자종류 및 조건

구 분		용 자 조 건			
		금리	한도액	상환기간	
일반 용자	육성자금	모범음식점	2%	5천만원	1년거치2년균등분할
	시설개선 자금	일반휴게제공점위탁급식영업	2%	1억원	1년거치3년균등분할
		식품접객업소 화장실	1%	2천만원	1년거치2년균등분할
		식품제조업소	2%	8억원	3년거치5년균등분할
		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	1%	3천만원	3년거치5년균등분할
특별 용자	육성자금	관광식당	1%	5천만원	2년거치3년균등분할
	시설개선 자금	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	1%	8억원	3년거치5년균등분할

## ○ 용자금 사용용도

- 시설개선자금 :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·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

- ▶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,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등
- ▶ 식기·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등 구입은 배제

- 육성자금 :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

- ▶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,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, 사업비 등
- ▶ 인건비·임대료(보증금)·용자금 상환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 등은 배제

- **용자 제외대상** -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8조
  - 호프집, 소주방, 단란주점 · 유흥주점 ·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(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)
  -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용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자 및 용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
  - 동일인에 대한 중복용자(업소수와 무관)

□ **용자처리 절차**

- **용자신청 방법**
  - 접수처 : 성북구 보건위생과(식품진흥기금 담당, ☎02-2241-6162)
  - 구비서류 : 용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이행확약서, 사업완료신고서, 영업신고증, 사업자등록증, 지정서(모범음식점, 한국음식점, 관광식당) 사본
  - 처리절차

